

소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(안) 요약

본 내용은 지난 4월 20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개최된 공청회 자료이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.

1. 개정배경

- '97년 11월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 이후 거세우 출현율 및 출하체중이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등급판정 기준개정 필요성 대두

- 거세우 출하체중 : ('98) 540kg ('01) 588 ('03) 620
- 수 소 거세비율 : ('98) 8.6% ('01) 20.6 ('03) 27.9
- 현행 소도체 등급기준(생체 600kg내외에서 설정)하에서는 거세우 고기맛이 싱거워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암소고기의 대체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산자의 건의(한우산업보완대책 협의회, '03.4.29)가 있었음
 - 700kg이상으로 장기 비육하여야 제맛이 나서 암소고기를 대체 할 수 있음

2. 추진상황

- 육량등급 산식개발과 근내지방도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조사

- 조사기간 : '03.8~10월(축산연구소와 축산물등급판정소 공동연구)
- 육량등급 산식개발을 위한 수율조사(631두)
- 근내지방도 조사



■ 소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실무협의회 개최

- 1차 회의 : '03.10.24.(축산불등급판정소 소회의실, 연구결과 협의)
- 2차 회의 : '03.12.12.(축산물등급판정소 소회의실, 연구결과 협의)
- 3차 회의 : '04.3.4.(축산물등급판정소 소회의실)
 - 참석자 : 소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12명
 - 안 건 : 소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(안) 협의



3. 개정(안) 요지

■ 육량등급 판정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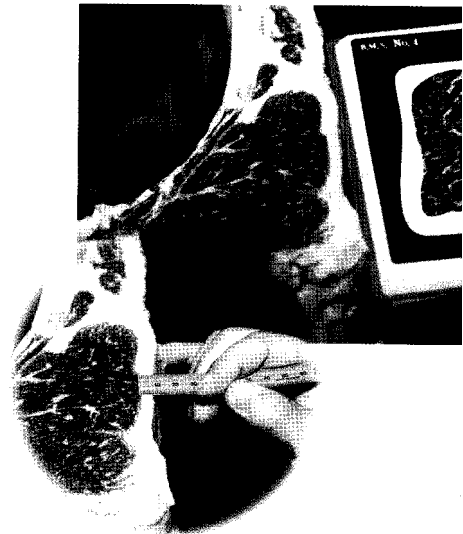
- 현행의 육량등급인 A등급, B등급, C등급의 3개등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
- 연구조사 결과에 의한 육량지수 산식 적용

$$\begin{aligned} \text{육량지수 산식} &= 68.184 - [0.625 \text{ 등지방두께(mm)}] \\ &\quad + [0.130 \text{ 배최장근단면적(cm}^2\text{)}] \\ &\quad - [0.024 \text{ 도체중량(kg)}] \end{aligned}$$

[단, 한우의 도체는 3.23을 가산하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]

- 육량등급 육량지수 범위

육량등급	육량지수
A등급	67.50 이상
B등급	62.00 이상~67.50 미만
C등급	62.00 미만



■ 육질등급 판정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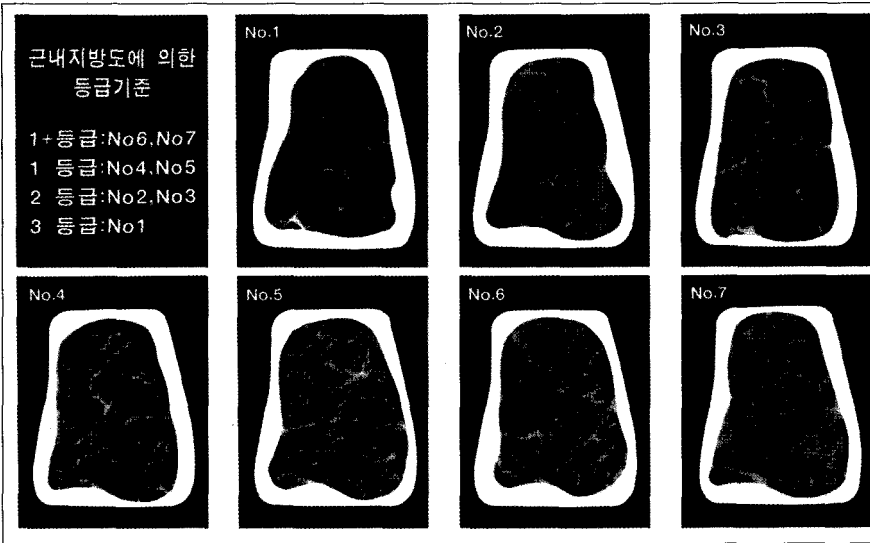
- 육질등급을 현행 1*, 1, 2, 3등급의 4개 등급에서 1*, 1*, 1, 2, 3등급의 5개 등급으로 확대
- 이에 따라 근내지방도 기준도 현행의 7개 단계(No.1 ~ No.7)에서 9개 단계(No.1 ~ No.9)로 세분화
-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에서 하향조정 해당항목 수에 따른 등급하락단계 조정



■ 등급표시 방법

- 등급표시 방법을 현행 육량·육질(예: A1')에서 육질·육량(예: 1'A)으로 개정
 - 육질등급이 육량등급 보다 앞에 표시 되므로써 소비자에게 육질등급의 혼선을 줄여줄 수 있음

<현행근내지방도 기준>



<개정근내지방도 기준>

